

#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정준호 의원 외 25인

나. 의안번호: 제1704호

다. 발의일자: 2024.4.3.

라. 회부일자: 2024.4.8.

### 2. 제 안 사 유

- 기후 위기와 탈탄소 전환을 위해 공공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전기차 상용화 시대 준비를 위해 공공의 영역에서 전기차 배터리 폐기물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가치와 효율이 반영된 전기차 배터리의 재활용을 유도하는 보급 정책 전환으로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고자 함.

### 3. 주 요 내 용

- 가.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정책 추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신설 (안 제3조제2항).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공공/민간) 시 배터리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우선 고려할 것을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1항).

####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타: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의 생산·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 걸쳐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온실가스 배출 저감, 배터리의 자원순환 등을 고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보급할 것을 명시한 것이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공용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게 지원할 때 배터리의 효율과 재활용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한 것임.

환경부 역시 2024년부터 관련 지침<sup>1)</sup>을 개정하여 재활용성이 낮은 리튬 인산철(LFP) 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고, 사용 후 배터리와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음.

---

1)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4.2.19.)